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84호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 운영 지자체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특구를 지역 주도 성장의 핵심적인 거점으로 육성

□ **(사업기간)** 선정일 ~ 2026년 12월

*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전담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공모로 선정된 컨설팅 희망 지자체에 특구 활성화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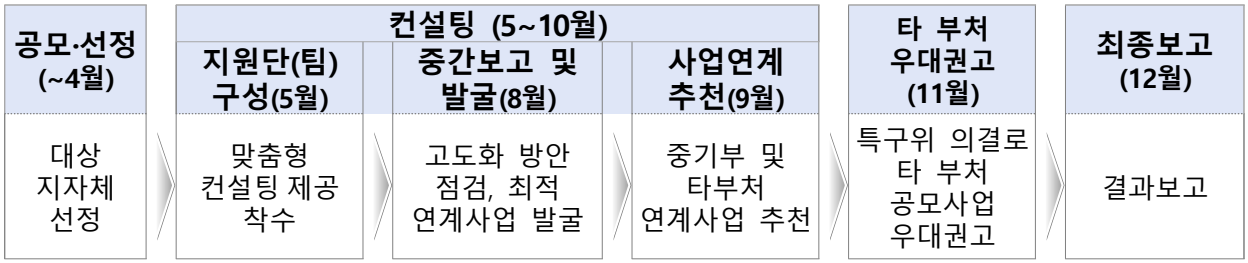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특구 운영 지방자치단체*(시군구) 10개 이내

* 「지역특구법」 제2조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 **(지원방식)**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컨설팅 지원단이 특구별 활성화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로컬크리에이터, 강한 소상공인, 중기부 상권·연고산업 육성사업 전문가 등

[특구 컨설팅 프로세스]

단계	주요 내용
① **지원단(팀) 구성**	민간 전문가, 지방중기청, 중진공(지역본지부) 원팀 체계 구축
② **심층 진단**	기존 특구 사업의 수익성·지속가능성 진단, 규제 애로사항 분석
③ **과제 도출**	앵커기업 부재, 킬러 콘텐츠 부족 등 주요 성장저해 요인 식별
④ **중간 보고 및 공유**	신규 BM 설계(안), 연계사업 매칭 등 중간보고
⑤ **중기부 사업 연계**	컨설팅을 바탕으로 중기부 상권·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 추천
⑥ **전략 수립**	민간 주도 상권 고도화 및 지역 특화산업 육성 모델 기획
⑦ **최종보고**	컨설팅 결과 및 사후관리 방안 보고

□ **(지원내용)** 인구 감소 및 산업 침체로 민간 활력과 창의적 아이디어 수혈이 시급한 특구에 상권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전략 등 제시

* **(예시)** 지역산업(상권) 활성화 비즈니스 및 특화사업 모델 개발, 연계사업 추천 등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주요내용(예시)]

구 분	주 요 내 용
대 상	소규모 · 소멸위기 지역 특구 운영 지자체
특 징	인구 감소 및 산업 침체로 민간 활력과 창의적 아이디어 수혈이 시급
핵심전략	민간 기획자 협업으로 상권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육성 전략 제시 → 중기부 상권·연고산업 육성사업 연계 추진

□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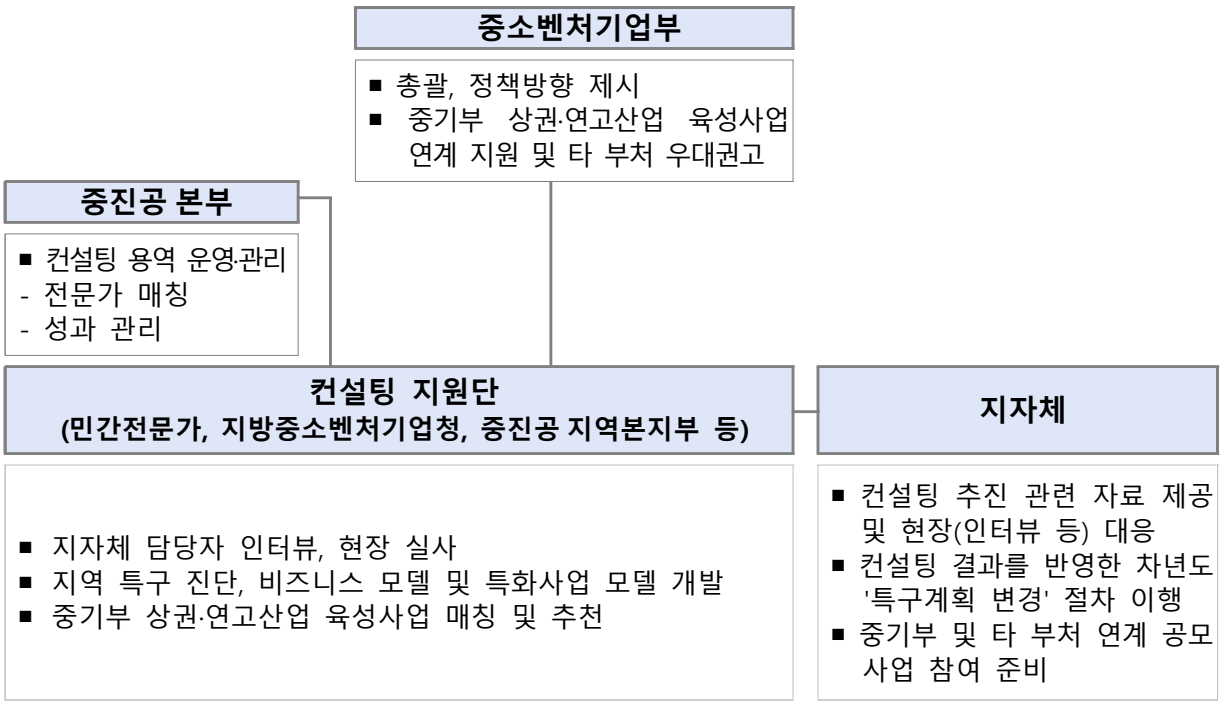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내용	추진일정
참여 지자체 신청·접수	▸(지자체) 희망 지자체 사업 참가 신청	~ 4월 초
참여 지자체 평가·선정	▸ (중기부/중진공) 평가를 통한 참여 지자체 최종 선정	~ 4월
컨설팅 착수	▸ (중진공/컨설팅 지원팀) 지원단(팀) 구성, 컨설팅 착수	5월~
중간보고 및 발굴	▸(컨설팅 지원팀) 특구 고도화 방안 점검 및 최적 연계사업 발굴	8월
사업연계 추천	▸(중기부) 중기부 및 타 부처 연계사업 추천	9월
타 부처 우대권고	▸(중기부→소관부처) 특구위 의결로 타 부처 공모사업 우대권고	11월
최종보고	▸(중진공/컨설팅 지원팀/지자체→중기부) 최종 결과 보고	12월

3. 신청 자격

□ **(지원대상)** ‘26년 1월 기준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총 171개)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총 136개)

※ [참고1]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별 세부지정 현황

□ **(제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협약 위반)**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사업 또는 특구 운영과 관련하여 협약 위반, 제재, 환수 등의 이력이 있는 지자체

○ **(중복 지원)** 본 컨설팅 신청 내용과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타 부처·공공기관의 컨설팅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허위 기재)**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대한 내용을 누락한 경우(선정 이후라도 발견 시 즉시 선정·지원 취소)

4.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 신청기간 : ’26. 03. 30(월) ~ ’26. 04. 17(금)

□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방법 : 아래 제출서류 일체를 포함하여 신청서 제출 공문(전자문서)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역혁신사업처)으로 송부

※ 사업신청서[붙임1]를 신청 공문에 첨부

○ 제출서류 목록표

연번	제출 서류명	제출 형태	비고
1	신청 공문(지자체장 명의)	전자문서	
2	[붙임 1]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사업 신청서	붙임 파일 (스캔본 PDF 및 HWPX)	스캔본 PDF 에 직인 날인
3	[붙임 2] 참여 지자체 서약서		스캔본 PDF 에 부서장 서명
4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파일 (스캔본 PDF 및 HWPX)	스캔본 PDF 에 담당자 서명

※ 2~4번 서류는 직인 및 서명이 날인된 스캔본(PDF 등)과 함께, 편집이 가능한 한글 워드프로세서 원본 파일(HWPX)을 반드시 함께 제출

□ 선정절차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①사전 검토 → ②서면 평가 → ③대면(발표) 평가의 3단계 절차를 거쳐 최종 10개 내외 지자체를 선정

평가 단계	수행 주체	주요 평가 내용
① 사전 검토 (4 월 초)	중기부·중진공	• 신청 지자체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제출 서류 누락, 필수 항목 미기재 등 적격성 검토
② 서면 평가 (4 월 중)	평가위원회	• 제출된 사업 신청서를 바탕으로 서면 심사 진행 • 평가 기준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 규모의 1.5 배수 내외를 대면(발표) 평가 대상으로 선발
③대면(발표) 평가 (4 월 말)	평가위원회	• 기 제출된 사업 신청서를 바탕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별도의 발표 자료 제출 없음) • 지자체의 추진 의지, 문제 진단의 정확성 및 컨설팅 연계 전략의 타당성 등 심층 평가
④ 최종 선정 (5 월 초)	중기부·중진공	• 서면 및 대면(발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 지자체 확정 및 개별 통보

※ 상기 평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대면(발표) 평가 세부 일정 및 안내 사항은 서면 평가 통과 지자체에 한하여 개별 안내 예정

□ 특구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평가 기준표

○ 서면 및 대면(발표) 평가 시 아래의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 지자체를 선정

평가 부문	세부 평가 지표	주요 평가 내용	배점
컨설팅 지원의 필요성 (30 점)	특구 운영 현황 및 활력 제고 필요성	• 특구를 둘러싼 여건 변화(정체 현상 등)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상권 육성 등 민간 활력 수혈의 필요성이 타당한가?	15
	지자체의 추진 의지 및 준비도	• 특구의 발전적 재편과 중기부 연계사업 참여를 위한 지자체의 의지가 뚜렷하며, 협업을 위한 행정적 지원 준비가 되어 있는가?	15
계획 및 전략의 타당성 (40 점)	특구 고도화 및 활성화 방향	• 민간 기획자와 협업하여 상권 활성화 및 지역 특화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방향이 해당 특구의 실정에 부합하는가?	20
	지역 자원 활용 및 발전 잠재력	• 특구 내 유·무형 자원과 특화사업을 결합하여, 새로운 로컬 거점 상권 및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킬 잠재력이 있는가?	20

평가 부문	세부 평가 지표	주요 평가 내용	배점
기대효과 및 파급성 (30 점)	지역 활력 제고 및 기대효과	•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상권이 부흥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 및 민간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가?	15
	타 사업 연계 및 중장기 발전 방안	• 도출된 로드맵을 바탕으로 중기부 상권·연고산업 육성사업 및 타 부처 공모사업 연계 성공 가능성이 높으며, 지속 가능한가?	15
가점 (최대 10 점)	인구감소지역	•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관심 지역(107 개 시군구)에 해당하는 경우 - 인구감소지역 (89 개) : 10 점 - 인구감소관심지역 (18 개) : 5 점 ※ [참고 2] 행안부 인구감소·관심 지역 지정 현황	10
	운영성과 우수	• 최근 2 개년도('23, '24 년 실적) 특구 운영성과평가 '우수' 등급 이상을 한번 이상 받은 지자체인 경우 ※ 중기부고시 제 2025-117 호, 제 2024-103 호 참고	2

※ 동점자 처리 기준 : 종합 평점이 동점일 경우, ①계획 및 전략의 타당성, ②컨설팅 지원의 필요성, ③기대효과 및 파급성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정

※ 주의 : 가점 항목 2개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가점 총합은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5. 유의사항, 지자체 의무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위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차년도 사업 신청 불가 등으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미비나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지자체의 책임으로 함

□ 선정 지자체 의무사항(사후관리)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본 컨설팅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성과 창출을 위해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현장 및 자료 협조)** 컨설팅 지원단(팀)의 현장 실사 및 지자체 담당자·관계자 인터뷰 진행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할 의무

- **(특구계획 변경 이행)** 맞춤형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중으로 기존 특구계획을 변경·수립하는 행정 절차를 이행할 의무

- **(사후 모니터링 협조)** 사업 종료 후 타 부처 공모사업 연계 실적 등 성과 조사(모니터링)를 위한 주무부처 및 전담기관의 자료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할 의무

□ **문의처**

구분	담당 업무(문의 내용)	전화번호	e-mail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 (주무부처)	**[사업 총괄 및 제도]** • 컨설팅 지원사업 총괄 및 정책 방향	044-204-7591 044-204-7597	jyjang0104@korea.kr goeb11@korea.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혁신사업처 (전담기관)	**[평가 및 실무 운영]** • 사업 신청·접수 및 평가 • 제출 서류 작성 안내 • 컨설팅 운영 실무 등	055-751-9403 055-751-9407	jyp@kosmes.or.kr kosme1357@kosmes.or.kr

※ 붙임 : 1. (양식)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사업 신청서
2. (양식) 참여 지자체 서약서
3. (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자체 담당자용)

※ 참고 : 1.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별 세부지정현황('26.1월 기준)
2.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 지역 지정 현황(행안부)
3. (참고) 지역상권 육성 사업(중기부) 개요('26년 기준)
4. (참고)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부처 협업) 개요('26년 기준)

붙임 1 **[양식]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사업 신청서(공문 제출)**

※ 본 신청서는 서면 및 대면(발표) 평가의 유일한 심사 자료로 활용되므로,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 신청서

1. 신청 지자체 및 특구 일반 현황

특구명					
운영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직위/직급)	**전화 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가점 해당 여부 **(해당 시 ☑ 표시)**	[ ] 인구감소·관심지역(행정안전부 지정 107개 시군구 해당) [ ] 운영성과 우수('24,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우수' 등급 이상 지자체)				

2. 특구 개요

지정 기간	0000.00.00 ~ 0000.00.00(0년)
특화사업자/ 사업기간	/
지정사유	*※ 특구 지정 시 고시 내용 요약 기재*
위치	*○○도 ○○시 ○○면 ○○리 ○○번지 일원(○○필지)*
면적	
특화사업	- (분야의 적절성) *※ 지역 특색을 반영한 특화사업 분야가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 기재* - (지역자원과의 연계성) *※ 특구의 특화사업과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기재*

관계 규정과 관련 제반 사항을 준수하면서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동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신 청 기 관 :
신 청 인 : (직인)

3. 특구 컨설팅 세부 사업계획서 (※ 필요시 칸을 늘려 작성 가능)	
구분	**주요내용**
1. 컨설팅 지원의 필요성	**1-1. 특구 운영 현황 및 활력 제고 필요성** *※ 인구, 산업, 상권 등 현재 특구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변화(정체 및 감소 현상 등)를 객관적 데이터(통계 등)를 바탕으로 진단* *※ 특구의 새로운 도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권 육성이나 연고산업 고도화 등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입이 필요한 사유 기재* **1-2. 지자체의 추진 의지 및 준비도** *※ 특구의 발전적 재편과 향후 중기부 연계사업(상권·연고산업 육성 등) 참여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준비 상황 및 추진 노력 기재* *※ 민간 기획자(로컬크리에이터 등)와의 원활한 협업 및 타 부처 정책(인프라 조성 등) 연계를 뒷받침할 행정적·제도적 지원 계획 제시*
2. 계획 및 전략의 타당성	**2-1. 특구 고도화 및 활성화 방향** *※ 특구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기획자와 협업하여 특화산업 기반의 로컬콘텐츠 개발, 상권 브랜딩 등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향후 발전 방향 제시* *※ '중기부 상권·연고산업 육성사업' 등 공모사업과의 성공적인 연계를 위해, 본 사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진단 및 조언을 얻고 싶은 맞춤형 컨설팅 희망 분야 기재* **2-2. 지역 자원 활용 및 발전 잠재력** *※ 특구 내 활용 가능한 유·무형의 지역 연고자원(역사, 문화, 특산물, 유휴시설 등) 현황 기재* *※ 해당 자원과 기존 특화사업을 결합하여, 향후 특구를 로컬 거점 상권이나 연고산업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 및 아이디어 제시*
3. 기대효과 및 파급성	**3-1. 지역 활력 제고 및 기대효과** *※ 맞춤형 컨설팅 및 향후 연계 사업 추진을 통해 예상되는 생활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상권 부흥 등 지역 활력 제고 측면의 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 기재* **3-2. 타 사업 연계 및 중장기 발전 방안** *※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중기부 상권·연고산업 육성사업'에 도전하기 위한 후속 연계 로드맵 기재* *※ 범부처 협업 정책(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식품부 농촌협약, 문체부 관광주민증 등)과의 시너지 창출 방안 및 지속 가능한 민간 주도 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 기재*

붙임 2 **[양식] 참여 지자체 서약서**

서 약 서

본 지자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에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본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으며, 고의적인 누락이나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 만약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지자체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관련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3. 본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컨설팅 지원단(팀)의 현장 실사 및 진단에 적극 협조하며, 도출된 전략을 바탕으로 특구 활성화 계획을 성실히 수립 및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사업 수행 중 및 종료 후 사업의 성과 분석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기 관 :
신 청 인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3 [양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지자체 담당자용]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사업 수행 관리(안내, 연락 등), 성과 추적 및 모니터링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소속 기관명, 부서명, 직위/직급,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성과 관리 목적 달성 시까지 (최대 5년 보관 후 지체 없이 파기)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 신청 및 선정 심사, 담당자 연락 등 본 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안내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참고 1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별 세부지정현황('26.3월)

시·도	시·군·구	특 구 명 칭	지정년도
서울	동대문구	서울 약령시한방산업특구	2005년
	노원구	노원 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	2007년
	은평구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2015년
	성동구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	2015년
	강서구	서울 강서미라클-메디특구	2015년
	중랑구	서울 중랑 역사문화교육특구	2016년
	영등포구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2017년
	동작구	동작 직업교육특구	2019년
	용산구	용산 역사문화르네상스 특구	2021년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2024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2005년
	기장군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2007년
	남 구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2010년
	동래구	동래 문화교육특구	2015년
	진 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특구	2021년
	서 구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	2022년
대구	중 구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2004년
		대구 중구 패션주얼리특구	2005년
	북 구	대구 안경산업특구	2006년
		대구북구 고대역사문화체험특구	2017년
	중구·수성구	메디시티대구 글로벌 의료 특구	2021년
인천	서 구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2005년
	중 구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	2007년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광산구 우리밀산업특구	2011년
	남 구	광주 남구 문화교육특구	2011년
	동 구	광주 동구 문화예술특구	2017년
대전	서구·유성구	대전(서구·유성구) 특수영상콘텐츠 특구	2024년
울산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2006년
	남 구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2008년
	중 구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	2023년
	울산광역시, 동구, 울주군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2025년
경기	이천시	이천 도자산업특구	2005년
	군포시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2005년
	양평군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2005년
		양평 헬스투어힐링특구	2016년
	고양시	고양 화훼산업특구	2006년
		고양 전시문화특구	2010년
	여주시	여주 쌀산업특구	2006년
	양주시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2008년
	안산시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2009년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	2020년

시·도	시·군·구	특 구 명 칭	지정년도
	시흥시	시흥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	2012년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 특구	2024년
	의왕시	의왕 철도특구	2013년
	남양주시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	2015년
	수원시	수원 인문기행특구	2016년
	부천시	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2017년
	안양시	안양 인문교육특구	2017년
	양주시,포천시, 동두천시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2018년
	성남시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2021년
강원	원주시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2005년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2006년
	태백시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2005년
	강릉시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2005년
	삼척시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2008년
	영월군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2008년
	정선군	정선 아리랑·5일장특구	2010년
	인제군	인제 산나물특구	2011년
		인제 용대황태산업특구	2014년
	평창군	평창 산양삼특구	2014년
	홍천군	홍천 청정 산양삼산업특구	2014년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	2016년
	강릉시,속초시, 평창군,고성군	강원 명태산업광역특구	2015년
충북	제천시	제천 약초웰빙특구	2005년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	2021년
	옥천군	옥천 묘목산업특구	2005년
		옥천 옻산업특구	2005년
	충주시	충주 사과특구	2005년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2005년
	영동군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2005년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2007년
	음성군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2006년
	청주시	청주 직지문화특구	2007년
	보은군	보은 대추한우특구	2008년
	증평군	증평 에듀팜특구	2009년
	청주시, 충주시, 증평군, 진천군,괴산군, 음성군	충북 태양광산업특구	2011년
	진천군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2013년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특구	2020년
	충청북도, 진천군, 음성군	진천·음성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2023년
충남	금산군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2005년
		금산·추부 깻잎특구	2015년
	논산시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2006년
		논산 양촌곶감특구	2006년
		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	2007년
	청양군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2006년

시·도	시·군·구	특 구 명 칭	지정년도
	홍성군	홍성 저탄소·유기농업특구	2014년
	서천군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2007년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	2009년
		서천 친환경 서래야 김 산업특구	2020년
	아산시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2007년
	천안시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2008년
	서산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2008년
	부여군	부여 양송이특구	2009년
	공주시	공주 알밤특구	2010년
	보령시	보령 만세버섯산업특구	2016년
전북	순창군	순창 장류산업특구	2004년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2008년
	고창군	고창 복분자·식초 산업특구	2004년
		고창 경관농업특구	2004년
	완주군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2005년
	진안군	진안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	2005년
	부안군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2007년
	김제시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2016년
	전주시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2010년
	장수군	장수 말레저문화특구	2011년
	정읍시	정읍 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	2015년
	임실군	임실엔치즈·낙농특구	2016년
전남	곡성군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2005년
	함평군	함평 나비산업특구	2006년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2008년
	장흥군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	2006년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2008년
		장흥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	2017년
	보성군	보성 녹차산업특구	2007년
	광양시	광양 매실산업특구	2008년
	신안군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2008년
		신안 시금치·대파산업특구	2017년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	2025년
	고흥군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	2014년
		고흥 분청사기문화예술특구	2016년
	영광군	영광 굴비산업특구	2009년
		영광 보리·모싯잎 산업특구	2010년
	완도군	완도 해조류·전복산업특구	2009년
	구례군	구례 야생화생태특구	2010년
		구례 산수유산업특구	2011년
	나주시	나주 배산업특구	2010년
	해남군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	2010년
	화순군	화순 백신산업특구	2010년
	목포시	목포 세계화인재양성특구	2011년

시·도	시·군·구	특 구 명 칭	지정년도
	진도군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2013년
		진도 울금산업특구	2018년
	영암군	영암 무화과산업특구	2015년
	담양군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2016년
	장성군	장성 편백힐링특구	2016년
	강진군	강진 쌀귀리융복합산업특구	2023년
	무안군	무안 도자복합산업특구	2023년
경북	영양군	영양 고추산업특구	2007년
	안동시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2005년
	상주시	상주 곶감특구	2005년
		상주 고랭지포도특구	2006년
	영천시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	2005년
	영덕군	영덕 대게특구	2005년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2007년
	성주군	성주 참외산업특구	2006년
	김천시	김천 포도·자두산업 특구	2006년
	의성군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2006년
	문경시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2006년
	경산시	경산 종묘산업특구	2007년
	포항시	포항 구룡포과메기산업특구	2007년
	청도군	청도 반시나라특구	2007년
		청도 우리정신글로벌화교육특구	2012년
	구미시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2008년
	칠곡군	칠곡 양봉산업특구	2008년
	청송군	청송 사과특구	2008년
	예천군	예천 곤충산업특구	2009년
	경주시	경주 화랑 유소년스포츠특구	2016년
경남	창녕군	창녕 우포누리 마늘·양파산업특구	2016년
	산청군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2005년
	의령군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2005년
	함양군	함양 지리산 산양삼산업특구	2005년
	거창군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2013년
		거창 치유산업특구	2016년
		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	2019년
	하동군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2006년
	고성군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2007년
	거제시	거제 해양휴양특구	2010년
	창원시	창원 단감산업특구	2015년
	함안군	함안 수박산업특구	2016년
	진주시	진주 남가람 문화예술 특구	2023년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휴양예술특구	2013년
	제주시	제주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 특구	2009년

참고 2 **인구감소 · 인구감소관심 지역 지정 현황**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 -15호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상북도 군위군이「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구감소지역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78호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구감소관심지역

구분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
부산광역시(2)	금정구, 중구
인천광역시(1)	동구
광주광역시(1)	동구
대전광역시(3)	대덕구, 동구, 중구
경기도(2)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특별자치도(4)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전북특별자치도(1)	익산시
경상북도(2)	경주시, 김천시
경상남도(2)	사천시, 통영시

참고 3 [참고] 지역상권 육성 사업(중기부) 개요('26년 기준)

※ 하단 사업 내용은 지역상권 육성 사업의 3가지 유형(글로컬 상권, 로컬거점상권, 유망 골목상권) 중 '로컬거점상권'형에 해당

■ 사업개요

○ 지역의 특화산업·제조업 등과 접목한 로컬콘텐츠 개발, 상권 브랜딩 등을 종합 지원하여 지역경제와 로컬의 거점상권으로 조성

■ 지원규모 : 신규 10곳 내외, 개소당 2년 최대 40억원(국비 50% 이상 + 지방비)

* 1년당 국비·지방비 최대 20억원 지원, 연차별 지방비 매칭

** 국비 50%, 지방비 50%를 기본으로 하되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자주도('25년 예산) 등에 따라 국고보조율 차등 지원

*** 시설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건물 매입 등 현물 투자도 매칭지방비로 인정 가능 (최대 매칭 비율 등 세부내용 추후 공지)

■ 지원대상 : 특색있는 지역자원을 보유한 상권 컨소시엄(서울 外 지역)

○ ①**주관기관***, ②지역 **특화자원 관련 업종·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③**기초 지방정부*****로 구성된 **컨소시엄**

* 상권기획 전문성을 갖춘 법인으로서 로컬창업기업, 비영리법인, 지역대학 등 형태 무관 (ex. 민간기업, 상권활성화재단, 지역 공공기관, 지역대학 등)

■ 지원내용

① 지역특색(특화산업·제조업 등)을 활용한 로컬콘텐츠 및 특화상품 개발, 소상공인 역량강화 등 상권 브랜딩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연계 예시) 미식, 화장품, 의류·봉제, 소공인, 기타 지역별 특화 산업·문화 등

② 상권 방문 매력도 제고를 위한 공간 재생·활성화, 소상공인·방문객 거점 조성, 상권환경 개선 등 종합 지원

③ 지역별 특성에 따른 관계부처·지방정부 사업 연계 지원 등

■ 신청 · 접수

○ 시·도가 관할 시·군·구별 신청서를 취합하여 전자문서 송부(소진공)

■ 추진절차(안)

모집공고/설명회	→	전문가 심사	→	대국민 심사	→	컨설팅	→	사업 추진
민간·지방정부 대상 설명회		1,2차 서류·현장평가		3차 대국민 경진대회		사전 컨설팅		상권별 컨소시엄
2026.2월		2026.3월		2026.4~5월		2026.5~6월		26.6월~28.5월

참고 4 [참고]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부처 협업) 개요('26년 기준)

◇ **중기부**와 **행안·법무·농식품·문체·해수부** 등 6개 부처가 **부처별 정책수단**을 긴밀히 **연계·협업**하여 **지방소멸에 공동 대응**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추진**('19~, 중기부)

○ **인구감소·관심지역, 농어촌지역** 등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시군구 지자체** 소재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2년 지원)

*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농어촌지역 152개(중복 제외)

- **지역 연고산업(자원)을 활용**하여 시군구 **지자체가 기획**한 과제에 대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메뉴판식**으로 제공

* 애로기술 해소 컨설팅, 시험분석 및 인증 획득, 시제품 제작, 마케팅, 디자인 개선 등

□ **지방소멸 공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 **기초지자체**가 **지역 연고산업(자원)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중기·행안·법무·농식품부 등 **부처별 정책***을 **연계**하여 **집중 지원** ('24년~)

* (중기부) 사업화 지원 + (행안부·농식품부) 인프라 구축 + (법무부) 외국인력 공급

○ **'24년 중기부** (시군구연고산업육성)와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협업을 통해 **기업지원과 인프라조성**을 **연계**

- '25년 협업부처를 **법무부(외국인력)·농식품부(농촌인프라)**까지 **확대***

* 4개 부처(중기·행안·법무·농식품) - 31개 기초자치단체 간 MOU 체결('25.5.30)
※ 경제관계장관회의 발표('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지원' 추진방안, '24.8)

- '26년 협업부처를 **문체부(관광 활성화)·해수부(어촌인프라)**까지 **확대***

중기부		법무부		행안부		농식품부		문체부		해수부
• 제품제작, 마케팅, 교육·컨설팅 등 기업 성장 지원	+	• 지역특화형 비자운영 시 우대	+	• 지방소멸 대응기금 평가시 우대	+	• 농촌협약 체결 시 우대	+	• 디지털관광 주민증 선정 시 우대('26~)	+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 시 우대('27~)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역특화형 비자		지방소멸 대응기금		농촌협약		디지털관광 주민증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기존								추가		

< (참고)부처별 협업 및 우대 내용 >

□ **(행안부)**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기업활동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중기부의 기업육성 프로그램과 협업

중기부(기업육성)	행안부(기금운용)	지자체(인프라)
• 제품제작, 마케팅 지원, 디자인 개선, 교육· 컨설팅 등 기업의 성장 지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시 예비선정 과제 수행 지자체 우대	•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교육장, 시설) 등 지원

□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지역 기업에 외국인력을 공급하고, 해당 기업의 집중 성장 및 외국인채용 지원, 정주여건 개선을 협업

중기부(외국인 채용 기업지원)	법무부(비자운영)	지자체(정착지원)
• 외국인 고용기업에 기업 성장·외국인 특화 프로그램 지원	• 지역특화형 비자운영 시 우대 * 지역별 비자 규모 할당	• 외국인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기숙사, 커뮤니티센터 등 각종 인프라 지원

□ **(농식품부)** 농식품부의 공간 재구조화 지원(H/W)과 중기부의 농촌기업 특화지원*(S/W), 농민·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협업

* 농촌 재구조화 계획에 따른 농촌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입주기업 중심 지원

중기부(농촌특화 기업지원)	농식품부(공간재구조)	지자체(정주여건)
• 농산물 임가공 관련 기업 특화지원	• 농촌협약 체결 시 우대	• 농민, 근로자 등 정주여건 개선

□ **(문체부)** 연고자원 활용 기업 육성·관광 활성화를 통해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성장과 관광상품화 등을 협업

중기부(연고자원 기업지원)	문체부(지역관광 활성화)	지자체(관광 혜택)
• 연고자원 관련 기업 육성	• 디지털관광주민증 선정 시 우대	• 연고자원 관련 관광자원 대국민 혜택 부여

□ **(해수부)** 어촌소멸 대응을 위해 해수부의 어촌 인프라 조성 지원과 중기부의 어촌기업 특화지원 등을 협업

중기부(어촌특화 기업지원)	해수부(어촌인프라)	지자체(정주여건)
• 수산물 가공 관련 기업 특화 지원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시 우대	• 어민, 근로자 등 정주여건 개선